(붙임 3)

한국은행 목포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

2025. 6. 24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」(이하 "세칙") 및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」(이하 "절차")에 따라 한국은행 목포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대상) ① 목포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지원대상은 <별표1>에서 정한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<별표2>에서 정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사후심사 자료제출) 목포본부장은 절차 제5조에 따른 사후심사시 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대출금원장(사본)
2. 사업자등록증(명)(사본)
3. 금리산출표(사본)
4. 주된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본)
5.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(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등)
6. 기타 목포본부장이 요청한 서류

제4조(평가관리 기준) 절차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
1. 금리 감면폭(40%)
2. 제출자료의 정확성(20%)
3. 제출기한 준수 여부(20%)
4. 규정 준수 여부(20%)

제5조(기타 사항)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」,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」,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」 및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」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 <2017. 6. 26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기준에 의한 배정 개시일은 2017년 9월 첫 영업일로 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따른다.

부 칙 <2017. 8. 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②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목포본부장이 부여한 금융기관별 사전한도는 2017년 12월 배정시까지 적용한다.

부 칙 <2017. 12. 20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18. 5. 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18. 11. 27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19. 5. 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19. 8. 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19. 12. 12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0. 6. 16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0. 12. 14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1. 6. 9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1. 8. 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1. 12. 13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2. 6. 21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3. 3. 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3. 6. 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3. 8. 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5항의 기준 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(2024. 3. 28.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(2024. 6. 27.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(2024. 12. 19.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(2025. 1. 15.)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(2025. 6. 24.)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〈별표1〉

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[1)2)]

지원대상코드	지원대상	지원부문	선정기준
A1	창업기업	일반	-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조 및「동 법 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조업(한국표준산업분류표(이하 "KSIC") 10~34) 영위기업
A2	벤처기업	일반	-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업체
A3	혁신기업	일반	-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신기술(NET) 및 신제품(NEP) 인증서 획득기업 - ISO, JIS, UL, CE* 등 국제규격 또는 품질 인증 기업 * ISO(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), JIS(Japanese Industrial Standards), UL(Underwriters Laboratories Inc), CE(Certificate Of Europe) - 금융기관의 기술신용평가 대출(은행자체 TCB 포함, 기술평가등급 T-1~T-4)을 받은 업체 -「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에서 정한 산·학·연 공동기술 혁신사업 참여기업 -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갖춘 기업
A4	녹색기업	일반	-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녹색기업 -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거나 동 법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(EPD) 인증을 받은 제품 생산업체 -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7조의5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 확인(ETV)을 받은 기업 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GR(우수재활용제품) 인증을 받은 제품 생산업체 -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기업 -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받은 기업 -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우수 그린비즈(Green-Biz) 기업 -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32조에 의거 녹색인증(녹색기술 인증, 녹색사업 인증, 녹색기술제품 확인, 녹색전문기업 확인)을 받은 기업
A6	추천기업[3)]	일반	- 전라남도가 선정한 유망중소기업, 전남형 강소기업, 글로벌 강소기업 - 전라남도가 인증한 일자리 우수기업 - 광주·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,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,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금융기관 앞으로 추천한 업체

지원대상코드	지원대상	지원부문	선정기준
A7	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	일반	- 해상운송업(KSIC 501) 영위기업 - 식료품 제조업(KSIC 10) 영위기업 -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,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(KSIC 20312, 20313) 영위기업 - 농수축산용 기기 제작 및 수리업 영위기업 - 상시근로자수 500인이하 농림축산업자·농어업법인중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어업회사법인(KSIC 46~47)
A8	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	전략	- 선박 건조·수리업 및 관련 산업(KSIC 3111 등) - 여행업(KSIC 752), 숙박업(KSIC 55)(단, 여관·모텔업, 기타 숙박업(기숙사·고시원 등) 제외(KSIC 55102,5590)) -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,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관광객이용시설업, 국제회의업, 유원시설업, 관광편의시설업(단, 관광유흥음식점업, 관광극장유흥업, 외국인전용 유흥 음식점업 제외) - 태양광, 풍력, 조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산업(KSIC 35114, 35115, 35119 등) - 세라믹신소재 및 도자기관련 산업(KSIC 23221, 23222, 23229 등) - 천일염 관련 산업(KSIC 07220 등) - 해양플랜트 관련 산업 - 해양레저장비 관련 산업(KSIC 3112 등)
A9	전입기업	일반	-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한국은행 목포본부 관할 지역으로 이전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(제조업(KSIC 10~34) 영위기업에 한함)
A10	수출관련기업	일반	-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가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
A11	소재·부품 생산기업	일반	-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3조,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특화선도기업 선정서, 전문기업확인서, 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기업
A13	농림수산업 관련기업	전략	-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농림어업(KSIC 01~03)을 영위하는 기업 -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업자·농어업법인 (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어업회사법인, 다만, 도매 및 소매업(KSIC 46~47) 영위기업 제외)
A14	명절·재해 자금 등 필요기업[4)]	일반	- 한국은행목포본부장이 특별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업체 o 명절 및 연말 등 자금수요기에 운전자금지원이 필요한 업체 o 수해, 화재 및 노사분규 등으로 인해 긴급자금지원이 필요한 업체 o 연쇄부도 등 특별경제현안 극복을 위해 자금지원이 필요한 업체

지원대상코드	지원대상	지원부문	선정기준
A15	기타 지원기업[4]	일반	- 기타 한국은행 목포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한 업체
A16	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	특별	- 음식업(KSIC 56) - 여관·모텔업, 기숙사 및 고시원, 기타 숙박업(기숙사·고시원 등)(KSIC 55102, 5590) - 도소매업(KSIC 45~47) - 운수업(KSIC 49, 51~52) - 여가업(KSIC 90~91) - 해운업(KSIC 501~502) -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한 위기징후지역 소재 업체중 테크노파크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

주: 1)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, 주된 업종의 기준은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름
2) 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일이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
3) 유관기관 추천업체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, 각 지역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
4) 각 지역본부장이 지원비율·지원한도·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

<별표2>

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[1)]

업종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1차)
전문 소매업	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
운송관련 서비스업	52915 주차장 운영업
주점업	5621 주점업
금융 및 보험업	64 금융업 65 보험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부동산업	68 부동산업
전문 서비스업	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
행정업	846 사회보장보험업 및 연금업
교육 서비스업	855 일반 교습학원
보건업	86 보건업
오락관련 서비스업	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

주: 1)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, 주된 업종의 기준은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름